#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





고용노동부(산업안전보건정책과-과태료, 적용범위, 공표, 지자체·이사회보고) 044-202-8809, 8810, 8813, 8815 고용노동부(산업안전기준과-도급·안전조치, 인증·검사, 안전관리자-제조업) 044-202-8854, 8857, 8856 고용노동부(산업보건기준과-감염병·석면, 건강진단, 작업환경측정·유해물질, 보건관리자·보건조치) 044-202-8876, 8874, 8878, 8875

고용노동부(직업건강증진팀-휴게시설·고객응대, 미세먼지·고열, 직무스트레스·과로) 044-202-8893, 8895, 8894 고용노동부(안전보건감독기획과-산재발생보고) 044-202-8910

고용노동부(안전문화협력림-산보위·관리책임자·관리감독자) 044-202-8928, 8927

고용노동부(건설산재예방과-안전관리비·재해예방지도기관, 환산재해율, 안전관리자-건설업) 044-202-8942, 8939,

8940

고용노동부(화학사고예방과-MSDS, PSM) 044-202-8971, 8967 고용노동부(안전문화협력림-안전보건교육) 044-202-8820, 8993, 8921

### 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 등) ① 「산업안전보건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 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. 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「통계법」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- 제3조(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)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 도를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기법의 연구 및 보급, 안전 · 보건 기술의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 다
- 제4조(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)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.
  - 1.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·보건 경영체제 운영 등의 기법에 관한 연구 및 보급
  - 2. 사업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의 향상
- 제5조(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)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.
  - 1. 산업 안전 및 보건 교육의 진흥 및 홍보의 활성화
  - 2. 산업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국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활동의 촉진
  - 3. 산업 안전 및 보건 강조 기간의 설정 및 그 시행
- 제6조(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·관리)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1 항제7호에 따라 산업재해에 관하여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유지·관리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.
- 제7조(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)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·증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. <개정 2020. 9. 8., 2022. 8. 16.>
  - 1.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보급ㆍ확산
  - 2. 깨끗한 작업환경의 조성
  - 3. 직업성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
- 제8조(사업주 등의 협조) 사업주(이 조에서만 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

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)와 근로자(이 조에서만 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·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), 그 밖의 관련 단체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협조해야 한다. <개정 2020. 9. 8.>

- 제8조의2(협조 요청 대상 정보 또는 자료) 법 제8조제5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"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.
  - 1. 「전기사업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하는 사업장별 계약전력 정보(법 제42조제1항에 따 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)
  - 2.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정보(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기간 중에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)

[전문개정 2023, 6, 27.]

- 제9조(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통 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한다.
  - 1.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6조에 따른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정보
  - 2.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정보
  - 3. 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 결과,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 등 안전·보건에 관한 정보
  - 4.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
  -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,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・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.
- 제10조(공표대상 사업장)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.
  - 1.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(이하 "사망재해자"라 한다)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
  - 2. 사망만인율(死亡萬人率: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의 비율을 말한다)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
  - 3.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
  - 4.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
  - 5.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
  -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이 관계수급인의 사업장으로서 법 제63 조에 따른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산 업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도급인의 사업장(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제11 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함께 공표한 다.
- 제11조(도급인이 지배·관리하는 장소) 법 제10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.
  - 1. 토사(土砂)・구축물・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
  - 2. 기계 · 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
  - 3.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
  - 4. 비계(飛階)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
  - 5.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
  - 6. 지반(地盤)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
  - 7.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
  - 8.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
  - 9.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·해체·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
  - 10.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
  - 11. 프레스 또는 전단기(剪斷機)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
  - 12. 차량계(車輛系)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
  - 13.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
  - 14. 「철도산업발전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(「도시철도법」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을 포함한다)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
  - 15. 그 밖에 화재·폭발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

- 제12조(통합공표 대상 사업장 등) 법 제10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고 도급인 사 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(질병으로 인한 사망재해자를 제외하고 산출한 사망만인율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보다 관 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을 말한다.
  - 1. 제조업
  - 2. 철도운송업
  - 3. 도시철도운송업
  - 4. 전기업

####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

- 제13조(이사회 보고·승인 대상 회사 등)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"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.
  - 1.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
  - 2.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(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3호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시로 한정한다)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 의 건설회사
  -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회사의 대표이사(「상법」 제40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지 못하는 회 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08조의5에 따른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)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.
  - 1.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
  - 2. 안전·보건관리 조직의 구성·인원 및 역할
  - 3. 안전·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
  - 4.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
- **제14조(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)**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(이하 "안전보건관리책임자" 라 한다)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(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는 별표 2와 같다.
  - ②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·시설·장 비 · 예산,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.
  -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 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.
- 제15조(관리감독자의 업무 등)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"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 다. <개정 2021, 11, 19.>
  - 1.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(이하 "관리감독자"라 한다)가 지휘·감독하는 작업(이하 이 조 에서 "해당작업"이라 한다)과 관련된 기계・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・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
  - 2.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·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·사용에 관한 교육·지도
  - 3.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
  - 4.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·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·감독
  - 5.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·조언에 대한 협조
    - 가.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(이하 "안전관리자"라 한다)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(이하 "안전관리전문기관"이라 한다)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
    - 나.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(이하 "보건관리자"라 한다)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(이하 "보건관리전문기관"이라 한다)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
    - 다.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(이하 "안전보건관리담당자"라 한다)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 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
    - 라.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(이하 "산업보건의"라 한다)
  - 6.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

- 가. 유해 · 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
- 나.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
- 7.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안전보건관리책임자"는 "관리감독자" 로. "법 제15조제1항"은 "제1항"으로 본다.
- 제16조(안전관리자의 선임 등)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 시근로자 수,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.
  - ② 법 제17조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"이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[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(「건 설산업기본법 시행령|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) 이상인 사업장]을 말한다. <개정 2021. 11. 19.>
  -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제52조에 따른 사업으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 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. 다만, 별표 3의 기 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  -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의 합계는 300명 이내[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원(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1의 종 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) 이내]이어야 한다.
  - 1. 같은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
  - 2.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
  -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은 해당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.
  - ⑥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21. 11. 19.>

제17조(안전관리자의 자격)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4와 같다.

제18조(안전관리자의 업무 등) ①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(이하 "산업안전보건위원회"라 한다)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(이하 "노사협의체"라 한다)에서 심의·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법 제25 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(이하 "안전보건관리규정"이라 한다)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
- 2.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
- 3.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(이하 "안전인증대상기계등"이라 한다)과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(이하 "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"이라 한다)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 · 조언
- 4.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
- 5. 사업장 순회점검, 지도 및 조치 건의
- 6.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·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·조언
- 7.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・관리・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・조언
- 8.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
- 9.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
- 10.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- ②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·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 려해야 한다.
- ③ 사업주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.
- ④ 안전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.
- ⑤ 안전관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안전보건관리책임자"는 "안전관리자" 로, "법 제15조제1항"은 "제1항"으로 본다.

제19조(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) ① 법 제17조제5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

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"이란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. <개정 2021. 11. 19.>

- ② 사업주가 법 제17조제5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을 안전관리자로 본다. <개정 2021. 11. 19.>
- **제20조(보건관리자의 선임 등)**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,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5와 같다.
  - ② 법 제18조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"이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. <개정 2021, 11, 19.>
  - ③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별표 3"은 "별표 5"로, "안전관리자"는 "보건관리자"로, "안전관리"는 "보건관리"로, "법 제17조제5항"은 "법 제18조제5항"으로, "안전관리전문기관"은 "보건관리전문기관"으로 본다. <개정 2021. 11. 19.>
- 제21조(보건관리자의 자격)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6과 같다.
- 제22조(보건관리자의 업무 등) ①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·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
  - 2.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(保護具)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 한 보좌 및 지도・조언
  - 3.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
  - 4. 법 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
  - 5.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(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)
  - 6.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
  - 7.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(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
    - 가.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
    - 나.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
    - 다. 부상 ·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
    - 라.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
    - 마.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
  - 8.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 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
  - 9. 사업장 순회점검, 지도 및 조치 건의
  - 10.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·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·조언
  - 11.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·관리·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·조언
  - 12.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
  - 13.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
  - 14.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  - ② 보건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.
  - ③ 사업주는 보건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·시설·장비·예산,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. 이 경우 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해야 한다.
  - ④ 보건관리자의 배치 및 평가·지도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안전관리자"는 "보건관리자"로, "안전관리"는 "보건관리"로 본다.
- 제23조(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)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건관리전 문기관은 지역별 보건관리전문기관과 업종별·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구분한다. <개정 2021. 11. 19.>
  - ② 법 제18조제5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. <개정 2021. 11. 19.>
  - 1.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(업종별·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)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
  - 2. 외딴곳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있는 사업장
  - ③ 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법 제17조제5항 및 이 조 제1항"은

"법 제18조제5항 및 이 조 제2항"으로, "안전관리자"는 "보건관리자"로, "안전관리전문기관"은 "보건관리전문기 관"으로 본다. <개정 2021. 11. 19.>

- 제24조(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.
  - 1. 제조업
  - 2. 임업
  - 3. 하수, 폐수 및 분뇨 처리업
  - 4. 폐기물 수집, 운반, 처리 및 원료 재생업
  - 5. 환경 정화 및 복원업
  - 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다.
  - 1.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을 것
  - 2. 제21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을 것
  - 3.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했을 것
  - ③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제25조 각 호에 따른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.
  -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제25조 각 호에 따른 업무 를 수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.
- 제25조(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)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0, 9, 8,>
  - 1.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
  - 2.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
  - 3.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
  - 4. 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종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・조언
  - 5.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,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・조언
  - 6. 산업 안전·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
- 제26조(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 등) ① 법 제19조제4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 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"이란 제24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 을 말한다.
  - 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법 제17조제5항 및 이 조 제 1항"은 "법 제19조제4항 및 이 조 제1항"으로, "안전관리자"는 "안전보건관리담당자"로, "안전관리전문기관"은 "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"으로 본다. <개정 2021. 11. 19.>
- **제27조(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요건)**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7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.
  - 1.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(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는 제외한다)
  - 2. 안전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
  -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8에 따른 인력 ·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.
  - 1.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
  - 2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
  - 「의료법」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
  - 4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
  - 5. 보건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
- 제28조(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)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  - 1.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
  - 2.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
  - 3. 위탁받은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에 차질을 일으키거나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
  - 4.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위탁 수수료를 받은 경우
  - 5.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
  - 6.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가 외에 금품을 받은 경우

- 7.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·감독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
- 제29조(산업보건의의 선임 등)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은 제 20조 및 별표 5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. <개정 2021. 11. 19.>
  - 1.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한 경우
  - 2.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
  - ②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.
  - ③ 사업주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위촉했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야 한다.
  -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할 사업장 수 및 근로자 수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 이 정한다.
- 제30조(산업보건의의 자격)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,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.
- 제31조(산업보건의의 직무 등) ① 산업보건의의 직무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법 제134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,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
  - 2.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
  - 3.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  - ② 산업보건의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안전보건관리책임자"는 "산업보건의" 로, "법 제15조제1항"은 "제1항"으로 본다.
- 제32조(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(이하 "명예산업안전감독관"이라 한다)을 위촉할 수 있다.
  - 1.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의 근로자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 운영 대상 건설공사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(해당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 우에는 지부・분회 등 명칭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해당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
  - 2.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 워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
  - 3.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
  - 4.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 직이 추천하는 사람
  -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업무(제8호는 제외한다)로 한정하며,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로 한정한다.
  - 1.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「근로기준법」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(이하 "근로감독관"이라 한다) 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
  - 2.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·기구 자체검사 참석
  - 3.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
  - 4.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
  - 5. 작업환경측정,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
  - 6.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
  - 7.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
  - 8.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
  - 9. 안전·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
  - 10.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
  -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  -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 동부장관이 정한다.
- 제33조(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)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산업안 전감독관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  - 1.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
  - 2.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 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
  - 3.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
  - 4.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
- 제34조(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)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별표 9와 같다.
- 제35조(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)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.
  - 1. 근로자대표
  - 2.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
  - 3.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(근로자인 제2호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9명에서 그 위원의 수를 제외한 수를 말 한다)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
  -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. 다만,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 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.
  - 1. 해당 사업의 대표자(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를 말한다. 이하 같다)
  - 2. 안전관리자(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,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 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) 1명
  - 3. 보건관리자(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,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 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) 1명
  - 4. 산업보건의(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)
  - 5.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
  -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(이하 "건설공사도급인"이라 한다)이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.
  - 1. 근로자위원: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,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
  - 2. 사용자위원: 도급인 대표자,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및 안전관리자
- 제36조(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)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 이 경우 근로 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.
- 제37조(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)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  - 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다.
  - ③ 근로자대표, 명예산업안전감독관, 해당 사업의 대표자,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.
  -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.
  - 1. 개최 일시 및 장소
  - 2. 출석위원
  - 3. 심의 내용 및 의결・결정 사항
  - 4. 그 밖의 토의사항
- 제38조(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)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

- 8 / 29 -

를 받아야 한다.

- 1.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
- 2.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
- ② 제1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, 사업주와 근로자 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.
- 제39조(회의 결과 등의 공지)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내용 등 회 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이나 사내보(社內報),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, 그 밖의 적절한 방 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.

#### 제3장 안전보건교육

- 제40조(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및 취소) ①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기관(이하 "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"이라 한다)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인 또는 산업 안전 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별표 10에 따른 인력 시 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.
  - ②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 하려는 자는 법인 또는 산업 안전 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별표 11에 따른 인력 ·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
  - ③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안전보건교 육기관(이하 "직무교육기관"이라 한다)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 다.
  - 1. 「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
  - 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12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가. 산업 안전 • 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나. 비영리법인
  - ④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  - 1. 교육기관의 명칭(상호)
  - 2. 교육기관의 소재지
  - 3. 대표자의 성명
  -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 관하여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 제4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  - 1. 교육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
  - 2.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실시를 거부한 경우
  - 3.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
  - 4.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. 제31조제1항 본문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교육의 내 용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

####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

- 제41조(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) 법 제41조제2항에서 "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"란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. <개정 2021. 10. 14.>
  - 1.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
  - 2. 「근로기준법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
  - 3.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
  - 4.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·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고소,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

[제목개정 2021. 10. 14.]

- 제42조(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)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에 해당하는 사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.
  - 1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; 기계 및 가구 제외

- 2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
- 3.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
- 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
- 5. 식료품 제조업
- 6.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
- 7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
- 8. 기타 제품 제조업
- 9. 1차 금속 제조업
- 10. 가구 제조업
- 11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
- 12. 반도체 제조업
- 13. 전자부품 제조업
- ②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·기구 및 설비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구체적인 범위는 고용노 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21, 11, 19,>
- 1.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
- 2. 화학설비
- 3. 건조설비
- 4. 가스집합 용접장치
- 5. 근로자의 건강에 상당한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밀폐・환기 ·배기를 위한 설비
- 6. 삭제 <2021. 11. 19.>
- ③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.
-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·개조 또는 해체(이하 "건설등"이라 한다) 공사
  - 가.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
  - 나.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
  - 다.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
  - 1) 문화 및 집회시설(전시장 및 동물원·식물원은 제외한다)
  - 2) 판매시설, 운수시설(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)
  - 3) 종교시설
  - 4)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
  - 5)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
  - 6) 지하도상가
  - 7) 냉동ㆍ냉장 창고시설
- 2.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
- 3. 최대 지간(支間)길이(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)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
- 4. 터널의 건설등 공사
- 5. 다목적댐, 발전용댐,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
- 6.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
- 제43조(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) ①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 비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 말하고, 그 외의 사업 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표 13에 따른 유해·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을 같은 표에 따른 규정량 이 상 제조·취급·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를 말한다.
  - 1. 원유 정제처리업
  - 2.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
  - 3.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. 다만,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 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  - 4. 질소 화합물, 질소 · 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
  - 5.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(단순혼합 또는 배함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)

- 6. 화학 살균・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[농약 원제(原劑) 제조만 해당한다]
- 7.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설비는 유해하거나 위험하 설비로 보지 않는다.
- 1. 원자력 설비
- 2. 군사시설
- 3.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
- 4. 도매·소매시설
- 5. 차량 등의 운송설비
- 6.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저장시설
- 7. 「도시가스사업법」에 따른 가스공급시설
- 8.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누출·화재·폭발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
- ③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.
- 1.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제1항에 따른 설비(제2항에 따른 설비는 제외한다. 이하 제2호에 서 같다)에서의 누출·화재·폭발 사고
- 2. 인근 지역의 주민이 인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제1항에 따른 설비에서의 누출·화재·폭발 사고
- 제44조(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) ①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 어야 한다.
  - 1. 공정안전자료
  - 2. 공정위험성 평가서
  - 3. 안전운전계획
  - 4. 비상조치계획
  - 5. 그 밖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  -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관한 세부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- 제45조(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) ① 사업주는 제43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설치(기존 설비의 제조・ 취급・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량・취급량・저장량이 증가하여 별표 13에 따른 유해・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) • 이전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해야 한다. 이 경우 「화학물질관리법」에 따라 사업주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 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제44조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작성ㆍ제출을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9. 8.>
  -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제출해야 할 공정안전보고서가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것인 경우로서 해당 사업주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과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공단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로 검토・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허가 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공정안전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.
- 제46조(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)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(이하 "안전보건진단"이라 한다)의 종류 및 내용은 별표 14와 같다.
  -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할 경우 기계·화공·전기·건설 등 분야별 로 한정하여 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.
  - ③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에는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, 작업조건·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등의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제47조(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)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인으 로서 제46조제1항 및 별표 14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종류별로 종합진단기관은 별표 15. 안전진단기관은 별표 16. 보건진단기관은 별표 17에 따른 인력·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.
- 제48조(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)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"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  - 1. 안전보건진단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

- 2.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진단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
- 3. 제47조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안전보건진단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
- 4. 안전보건진단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위탁 수수료를 받은 경우
- 5. 안전보건진단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
- 6. 안전보건진단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가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
- 7.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 · 감독을 거부 ·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
- 제49조(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) 법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"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"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말한다.
  - 1.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
  - 2.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
  - 3.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(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) 발생한 사업장
  - 4.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, 화재·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 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
- 제50조(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)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"이란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을 말한다.

####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

- 제51조(도급승인 대상 작업) 법 제59조제1항 전단에서 "급성 독성,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작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.
  - 1.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, 불화수소,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·분해·해체·철거하 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. 다만,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.
  - 2. 그 밖에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(이하 "산업재해보상 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
- 제52조(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)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(이하 "안전보건총괄책임 자"라 한다)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 한 상시근로자가 100명(선박 및 보트 건조업,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) 이상인 사업이 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으로 한다.
- 제53조(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)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
  - 2. 법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
  - 3. 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
  - 4.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·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
  - 5.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
  -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안전보건관리책임자"는 "안 전보건총괄책임자"로, "법 제15조제1항"은 "제1항"으로 본다.
  -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제1항 각 호의 직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.
- 제53조의2(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) 법 제64조제1항제8호에서 "화재·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 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  - 1. 화재·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
  - 2.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·설비 등에 끼일 우려가 있는 경우
  - 3. 차량게 하역운반기계, 건설기계, 양중기(揚重機) 등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와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경우
  - 4.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
  - 5.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우려가 있는 경우
  - 6. 기계 · 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
  - 7. 토사·구축물·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
  - 8.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질식이나 중독의 우려가 있는 경우

[본조신설 2021. 11. 19.]

- 제54조(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) 법 제65조제1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말한다.
  - 1. 산소결핍,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 는 작업
  - 2. 토사·구축물·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
- 제55조(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)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 사"라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.
- 제55조의2(안전보건전문가) 법 제67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"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.
  - 1.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
  - 2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
  - 3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  - 4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[본조신설 2021. 11. 19.]

- 제56조(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)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(이하 "안전보건조정자"라 한다)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는 각 건설공사의 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제1호 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거나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해 야 한다. <개정 2020. 9. 8., 2024. 3. 12.>
  - 1.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
  - 2.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인 경우 발주청이 같은 법 제49조제1항 에 따라 선임한 공사감독자
  - 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건설공사 중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
    - 가. 「건축법」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
    - 나.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
    - 다. 「주택법」 제44조제1항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
    - 라. 「전력기술관리법」 제12조의2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
    - 마.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
  - 4.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 직한 사람
  - 5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
  - 6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 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  -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  - ③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분리하여 발주되는 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거나 지정하여 각각의 공사 도급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- **제57조(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)** ① 안건보건조정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의 파악
  - 2. 제1호에 따른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
  - 3. 제1호에 따른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·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
  - 4. 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의 확인
  - ② 안전보건조정자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의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에게 자료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**제58조(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)** ① 법 제71조제1항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"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21. 11. 19.>

- 1.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
- 2.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[타설(打設)된 콘크리트가 일정 강도에 이르 기까지 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(部材)]
- 3. 터널의 지보공(支保工: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구조물)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
- 4.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
- ② 법 제71조제1항 본문에서 "건축·토목 분야의 전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"란 공단 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.
- 1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(토목공사 및 제1항제3호의 구조물의 경우는 제외한다)
- 2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토목구조기술사(토목공사로 한정한다)
- 3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토질및기초기술사(제1항제3호의 구조물의 경우로 한정한다)
- 4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건설기계기술사(제1항제4호의 구조물의 경우로 한정한다)
- 제59조(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) ① 법 제73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" 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(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) 미만인 공사와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. <개정 2022. 8. 16.>
  - 1.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
  - 2.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(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)에서 이루어지는 공사
  - 3. 사업주가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(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)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
  - 4.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
  -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(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)은 법 제73조제1항의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(이하 "기술지도계약"이라 한다)을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해야 한다. <신설 2022. 8. 16.> [제목개정 2022. 8. 16.]
- **제60조(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)**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(이하 "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"이라 한다)의 지도업무의 내용, 지도대상 분야, 지도의 수행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8과 같다.
- 제61조(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)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19에 따른 인력·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
  - 1. 법 제145조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(전기안전 또는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만 해당한다)
  - 2. 건설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하려는 법인
- **제62조(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)**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 게 제출해야 한다.
  -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재발급 등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  - ③ 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"란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  - 1. 지도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
  - 2.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업무를 거부한 경우
  - 3. 지도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지도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
  - 4. 별표 18에 따른 지도업무의 내용, 지도대상 분야 또는 지도의 수행방법을 위반한 경우
  - 5. 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3회 이상 입력하지 않은 경우
  - 6. 지도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
  - 7.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・감독을 거부・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
- **제63조(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)** 법 제75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"란 공사금액이 120 억원(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은

150억원)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.

제64조(노사혐의체의 구성) ① 노사혐의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1. 근로자위원
  - 가.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
  - 나.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. 다만,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
  - 다.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
- 2. 사용자위원
  - 가.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
  - 나. 안전관리자 1명
  - 다. 보건관리자 1명(별표 5 제44호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한다)
  - 라.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
- ②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의 관계수 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- ③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제67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노사협의체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.
- 제65조(노사협의체의 운영 등) ①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, 정기회의는 2 개월마다 노사혐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  - ② 노사협의체 위원장의 선출, 노사협의체의 회의,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및 회 의 결과 등의 공지에 관하여는 각각 제36조. 제3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.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산업안전보건위원회"는 "노사협의체"로 본다.

제66조(기계·기구 등) 법 제76조에서 "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·기구 또는 설비 등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· 기구 또는 설비를 말한다.

- 1. 타워크레인
- 2. 건설용 리프트
- 3. 항타기(해머나 동력을 사용하여 말뚝을 박는 기계) 및 항발기(박힌 말뚝을 빼내는 기계)

제67조(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)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 <개정 2021. 11. 19.>

- 1.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- 가. 「보험업법」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
  - 나. 「우체국예금・보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(專業)으로 하는 사람
- 2.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
- 3.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(이하 "한국표준직업분류표"라 한다)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, 교육 교구 방문강사, 그 밖에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
- 4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 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
- 5.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택배사업(소화물을 집화・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 업을 말한다)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
- 6.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 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
- 7.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
- 8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
- 9.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우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우전 업무를 하는 사람
- 10.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또는 제8호의 방문판매원이나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
- 11.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
- 12.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,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

- 13. 「화물자동차 우수사업법」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- 가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제1항제4호의 특수자동차로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
  - 나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제1항제4호의 특수자동차로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
  - 다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조제1호 본문의 피견인자동차나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 자동차로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
  - 라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29조제1항 각 호의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
- 14. 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
- 제68조(안전 및 보건 교육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) 법 제77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 사자"란 제67조제2호,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 <개정 2021. 11. 19.>
- 제69조(산업재해 예방 조치 시행 대상) 법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본부"란 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(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등록 된 것을 말한다)상 업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의 수가 200개 이상인 가맹본부 를 말한다. <개정 2020, 9, 8.>
  - 1. 대분류가 외식업인 경우
  - 2. 대분류가 도소매업으로서 중분류가 편의점인 경우

###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

- 제70조(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・기구) 법 제80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별표 20에 따른 기계 · 기구를 말한다.
- 제71조(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·기구 등) 법 제81조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·기구· 설비 및 건축물 등"이라 별표 21에 따른 기계·기구·설비 및 건축물 등을 말한다.
- 제72조(타워크레인 설치·해체업의 등록요건) ① 법 제8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려 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.
  - ② 법 제82조제1항 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  - 1. 업체의 명칭(상호)
  - 2. 업체의 소재지
  - 3. 대표자의 성명
- 제73조(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)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 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  - 1. 법 제38조에 따른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아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
  - 2.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·감독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
- 제74조(안전인증대상기계등) ① 법 제84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것을 말한다.
  -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
    - 가. 프레스
    - 나. 전단기 및 절곡기(折曲機)
    - 다. 크레인
    - 라. 리프트
    - 마. 압력용기
    - 바. 롤러기
    - 사. 사출성형기(射出成形機)
    - 아. 고소(高所) 작업대
    - 자. 곤돌라
  - 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
    - 가.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
    - 나. 양중기용(揚重機用) 과부하 방지장치

- 다.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
- 라.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
- 마.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
- 바.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(活線作業用) 기구
- 사. 방폭구조(防爆構造) 전기기계・기구 및 부품
- 아. 추락·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것
- 자. 충돌・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
- 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
  - 가.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
  - 나. 안전화
  - 다. 안전장갑
  - 라. 방진마스크
  - 마. 방독마스크
  - 바. 송기(送氣)마스크
  - 사. 전동식 호흡보호구
  - 아. 보호복
  - 자. 안전대
  - 차. 차광(遮光) 및 비산물(飛散物) 위험방지용 보안경
  - 카, 용접용 보안면
  - 타.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
- ②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,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- 제75조(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요건)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(이하 "안전인증기관"이라 한다)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  - 1. 공단
  - 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23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
    - 가. 산업 안전 · 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
    - 나. 기계 및 설비 등의 인증·검사. 생산기술의 연구개발·교육·평가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「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
- 제76조(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) 법 제88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"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  - 1. 안전인증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
  - 2.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 업무를 거부한 경우
  - 3. 안전인증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
  - 4. 안전인증·확인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
  - 5.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·감독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
- 제77조(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) ①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  -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
    - 가. 연삭기(研削機) 또는 연마기. 이 경우 휴대형은 제외한다.
    - 나. 산업용 로봇
    - 다. 혼합기
    - 라, 파쇄기 또는 분쇄기
    - 마. 식품가공용 기계(파쇄·절단·혼합·제면기만 해당한다)
    - 바. 컨베이어
    - 사. 자동차정비용 리프트
    - 아. 공작기계(선반, 드릴기, 평삭 · 형삭기, 밀링만 해당한다)
    - 자.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(둥근톱, 대패, 루타기, 띠톱,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)
    - 차. 인쇄기
  - 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

- 가,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
- 나.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
- 다. 롤러기 급정지장치
- 라. 연삭기 덮개
- 마.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
- 바.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
- 사. 추락・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(제74조제1항제2호아목의 가설기자재는 제외한다)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
- 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
  - 가, 안전모(제74조제1항제3호가목의 안전모는 제외한다)
  - 나, 보안경(제74조제1항제3호차목의 보안경은 제외한다)
  - 다. 보안면(제74조제1항제3호카목의 보안면은 제외한다)
- ②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,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- 제78조(안전검사대상기계등) ① 법 제93조제1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  - 1. 프레스
  - 2. 전단기
  - 3. 크레인(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)
  - 4. 리프트
  - 5. 압력용기
  - 6. 곤돌라
  - 7. 국소 배기장치(이동식은 제외한다)
  - 8. 원심기(산업용만 해당한다)
  - 9. 롤러기(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)
  - 10. 사출성형기[형 체결력(型 締結力) 294킬로뉴턴(KN) 미만은 제외한다]
  - 11. 고소작업대(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 업대로 한정한다)
  - 12. 컨베이어
  - 13. 산업용 로봇
  - ②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,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한다.
- 제79조(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)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(이하 "안전검사기관"이라 한다)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  - 1. 공단
  - 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24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가. 산업안전 · 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
    - 나. 기계 및 설비 등의 인증ㆍ검사, 생산기술의 연구개발ㆍ교육ㆍ평가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「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
- 제80조(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) 법 제96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"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  - 1. 안전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
  - 2.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검사 업무를 거부한 경우
  - 3. 안전검사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
  - 4. 안전검사 · 확인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
  - 5.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·감독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
- 제81조(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)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검사기관(이하 "자율안전검사기관"이라 한다)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25에 따른 인력·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
- 제82조(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) 법 제10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
- 1. 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
- 2.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
- 3. 검사업무를 하지 않고 위탁 수수료를 받은 경우
- 4. 검사 항목을 생략하거나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
- 5. 검사 결과의 판정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
- 제83조(성능시험 등) ① 법 제101조에 따른 제품 제조 과정 조사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 계등이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 또는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제조되었는지를 대상으로 한다
  -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1조에 따라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(이하 "유해ㆍ위험기계등"이 라 한다)의 성능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된 유해ㆍ위 험기계등 중에서 그 시료(試料)를 수거하여 실시한다.
 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품 제조 과정 조사 및 성능시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##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

- 제84조(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) 법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"란 별표 26 각 호에 따른 유해인자를 말한다.
- 제85조(유해성·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) 법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.
  - 1. 원소
  - 2.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
  - 3.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
  - 4. 「군수품관리법」 제2조 및 「방위사업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[「군수품관리법」 제3조에 따른 통상 품(痛常品)은 제외한다]
  - 5. 「농약관리법」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약 및 원제
  - 6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
  - 7. 「비료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
  - 8. 「사료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
  - 9.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 제품
  - 10. 「식품위생법」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
  - 11. 「약사법」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(醫藥外品)
  - 12. 「원자력안전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
  - 13. 「위생용품 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
  - 14. 「의료기기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
  - 15. 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
  - 16. 「화장품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
  - 17. 법 제108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칭, 유해성 · 위험성,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 및 연간 제조량·수입량을 공표한 물질로서 공표된 연간 제조량·수입량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물질
  - 18. 고용노동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물질
- 제86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·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)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"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20, 8, 27.>
  - 1.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
  - 2. 「농약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
  - 3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
  - 4. 「비료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
  - 5. 「사료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
  - 6. 「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원료물질
  -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

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

- 8. 「식품위생법」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
- 9. 「약사법」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
- 10. 「원자력안전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
- 11. 「위생용품 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
- 12. 「의료기기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
- 12의2. 「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
- 13. 「총포・도검・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
- 14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
- 15. 「화장품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
- 16.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(일반소 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
- 17.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·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. 이 경우 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만 제외된다.
- 18.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·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[시행일: 2020. 8. 28.] 제86조제12호의2

제87조(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) 법 제1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"이란 다 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. <개정 2020. 9. 8.>

- 1. β-나프틸아민[91-59-8]과 그 염(β-Naphthylamine and its salts)
- 2. 4-니트로디페닐[92-93-3]과 그 염(4-Nitrodiphenyl and its salts)
- 3. 백연[1319-46-6]을 포함한 페인트(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2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)
- 4. 벤젠[71-43-2]을 포함하는 고무풀(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)
- 5. 석면(Asbestos; 1332-21-4 등)
- 6.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(Polychlorinated terphenyls; 61788-33-8 등)
- 7. 황린(黃燐)[12185-10-3] 성냥(Yellow phosphorus match)
- 8. 제1호, 제2호,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(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 은 제외한다)
- 9.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(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 는 화학물질은 제외한다)
- 10.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 는 유해물질

제88조(허가 대상 유해물질) 법 제118조제1항 전단에서 "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한 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물질"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. <개정 2020. 9. 8.>

- 1. a-나프틸아민[134-32-7] 및 그 염(a-Naphthylamine and its salts)
- 2. 디아니시딘[119-90-4] 및 그 염(Dianisidine and its salts)
- 3. 디클로로벤지딘[91-94-1] 및 그 염(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)
- 4. 베릴륨(Beryllium; 7440-41-7)
- 5. 벤조트리클로라이드(Benzotrichloride; 98-07-7)
- 6. 비소[7440-38-2] 및 그 무기화합물(Arsenic and its inorganic compounds)
- 7. 염화비닐(Vinvl chloride; 75-01-4)
- 8. 콜타르피치[65996-93-2] 휘발물(Coal tar pitch volatiles)
- 9. 크롬광 가공(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(Chromite ore processing)
- 10. 크롬산 아연(Zinc chromates; 13530-65-9 등)
- 11. o-톨리딘[119-93-7] 및 그 염(o-Tolidine and its salts)
- 12. 황화니켈류(Nickel sulfides; 12035-72-2, 16812-54-7)
- 13.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(포함된 중 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)
- 14. 제5호의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(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0.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)
- 15.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 는 유해물질

- 제89조(기관석면조사 대상) ① 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  - 1. 건축물(제2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의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, 그 건 축물의 철거·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
  - 2. 주택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, 그 주택의 철거·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
  - 3. 설비의 철거·해체하려는 부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(물질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
    - 가. 단열재
    - 나. 보온재
    - 다. 분무재
    - 라. 내화피복재(耐火被覆材)
    - 마. 개스킷(Gasket: 누설방지재)
    - 바. 패킹재(Packing material: 틈박이재)
    - 사. 실링재(Sealing material: 액상 메움재)
    - 아.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자재
  - 4.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이면서, 그 파이프의 철거・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
  - ② 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"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20. 9. 8.>
  - 1.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ㆍ해체 부분에 사용된 자재가 설계도서, 자재 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을 포함 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2.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·해체 부분에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
- 제90조(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)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27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법 제120조제2항에 따라 고용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 확인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.
  - 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
  - 2. 「의료법」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
  - 3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
  - 4. 석면조사 업무를 하려는 법인
- 제91조(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) 법 제120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"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  - 1. 법 제119조제2항의 기관석면조사 또는 법 제124조제1항의 공기 중 석면농도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
  - 2. 정당한 사유 없이 석면조사 업무를 거부한 경우
  - 3. 제90조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
  - 4. 법 제119조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
  - 5. 법 제12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 확인을 받지 않거나 부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
  - 6. 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석면농도를 측정하게 한 경우
  - 7. 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석면농도 측정방법을 위반한 경우
  - 8.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·감독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
- 제92조(석면해체·제거업자의 등록 요건)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·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28에 따른 인력 ·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
- 제93조(석면해체·제거업자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) 법 제121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  - 1. 법 제122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

- 2. 법 제122조제3항에 따른 신고(변경신고는 제외한다) 또는 서류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
- 3.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벌금형의 선 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
- 4.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·감독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
- 제94조(석면해체·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·제거 대상) ① 법 제122조제1항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 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20. 9. 8.>
  - 1. 철거・해체하려는 벽체재료, 바닥재,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되 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
  - 2.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
  - 3.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(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)에 해당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
  - 4. 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에서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되어 있고 그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
  - ② 법 제122조제1항 단서에서 "석면해체ㆍ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"란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스스로 하려는 자가 제92조 및 별표 28에 따른 인력·시설 및 장 비를 갖추고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경우를 말한다.

###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

- 제95조(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요건)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별로 별표 29에 따른 인력·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법 제126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·분석능력 확인에서 적합 파정을 받은 자로 한다.
  - 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
  - 2. 「의료법」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
  - 3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
  - 4.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하려는 법인
  - 5.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의 부속기관(해당 부속기관이 소속된 사업장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한정하여 지정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)
- 제96조(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) 법 제126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  - 1. 작업환경측정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
  - 2.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거부한 경우
  - 3.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 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
  - 4. 법 제125조제8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환경측정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
  - 5. 법 제126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·분석능력 확인을 1년 이상 받지 않거나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 확인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
  - 6. 작업환경측정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
  - 7.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 · 감독을 거부 ·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
- 제96조의2(휴게시설 설치·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)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"사업의 종류 및 사업 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업장을 말한다.
  - 1. 상시근로자(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. 이하 제2호에서 같다)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(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)
  - 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(「통계법」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 분류에 따른다)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장(건설업은 제외한다)
    - 가. 전화 상담원
    - 나. 돌봄 서비스 종사원

- 다. 텔레마케터
- 라. 배달원
- 마.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
- 바. 아파트 경비원
- 사. 건물 경비원

[본조신설 2022. 8. 16.]

- 제97조(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요건) ①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으로서 별표 30에 따른 인력・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고용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 · 분석능력 확인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.
 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시・군(「수도권정 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속하는 시는 제외한다) 또는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대하여 「건강검 진기본법 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기관으로서 해당 기관에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사(특수건강진단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의사를 말한다) 및 간호사가 각각 1명 이상 있는 의료기관을 해당 지역의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- 제98조(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) 법 제13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  - 1.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검사항목을 빠뜨리거나 검사방법 및 실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건강진단을 하는 경우
  - 2.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의 비용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진단을 유인하거나 건강진단의 비용 을 부당하게 징수한 경우
  - 3.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·분석 능력 확인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
  - 4. 건강진단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 개인표 등 건강진단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
  - 5. 무자격자 또는 제97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가 건강진단을 한 경우
  - 6.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의 실시를 거부하거나 중단한 경우
  - 7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5조제4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를 거부한 경우
  - 8.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·감독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
- 제99조(유해·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) ① 법 제139조제1항에서 "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작업"이란 잠함(潛函) 또는 잠수 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을 말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에서 잠함·잠수 작업시간, 가압·감압방법 등 해당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  - ③ 법 제139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작업을 말한다.
  - 1. 갱(坑) 내에서 하는 작업
  - 2.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
  - 3.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
  - 4. 라듐방사선이나 엑스선, 그 밖의 유해 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
  - 5. 유리・흙・돌・광물의 먼지가 심하게 날리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
  - 6.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
  - 7. 착암기(바위에 구멍을 뚫는 기계) 등에 의하여 신체에 강렬한 진동을 주는 작업
  - 8. 인력(人力)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
  - 9. 납・수은・크롬・망간・카드뮴 등의 중금속 또는 이황화탄소・유기용제,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화학물질의 먼지ㆍ증기 또는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
- 제100조(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) 법 제14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  - 1. 교육과 관련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
  - 2.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 대한 교육을 거부한 경우
  - 3.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인하여 위탁받은 교육 업무의 수행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

- 4. 교육과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
- 5. 교육과 관련한 수수료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
- 6.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·감독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

###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

- 제101조(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) ① 법 제142조제1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  - 1.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지도
  - 2.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
  - 3.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
  - ② 법 제142조제2항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  - 1.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지도
  - 2.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
  - 3.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
- 제102조(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업무 영역별 종류 등) ①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기계안전·전기안전·화공안전·건설안전 분야로 구분하고, 같은 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직업환경의학 · 산업위생 분야로 구분한다.
  - ②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(이하 "지도사"라 한다)의 해당 업무 영 역별 업무 범위는 별표 31과 같다.
- 제103조(자격시험의 실시 등) ①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(이하 "지도사 자격시험"이라 한다)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
  - ② 지도사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업무 영역별 과목 및 범위는 별표 32와 같다.
  - ③ 지도사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제1차 시험은 선택형, 제2 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, 각각 주관식 단답형을 추가할 수 있다.
  - ④ 지도사 자격시험 중 제1차 시험은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 Ⅰ. 공통필수 Ⅱ 및 공통필수 Ⅲ의 과목 및 범 위로 하고. 제2차 시험은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의 과목 및 범위로 한다.
  - ⑤ 지도사 자격시험 중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.
  - ⑥ 지도사 자격시험 중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 또는 면제자에 대해서만 실시하되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.
  - 1. 전문지식과 응용능력
  - 2. 산업안전 · 보건제도에 관한 이해 및 인식 정도
  - 상담 · 지도능력
  - ⑦ 지도사 자격시험의 공고, 응시 절차,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- **제104조(자격시험의 일부면제)** ① 법 제143조제2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격 및 면 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, 기계안전기술사, 산업위생관리기술사, 인간공학기술사, 전기안전 기술사, 화공안전기술사: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·공통필수 I 및 공통필수 Ⅱ 과목
  - 2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건설 직무분야(건축 중 직무분야 및 토목 중 직무분야로 한정한다), 기계 직무분 야, 화학 직무분야, 전기·전자 직무분야(전기 중 직무분야로 한정한다)의 기술사 자격 보유자: 별표 32에 따 른 전공필수 과목
  - 3. 「의료법」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: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·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
  - 4. 공학(건설안전・기계안전・전기안전・화공안전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). 의학(직업환경의학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), 보건학(산업위생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) 박사학위 소지자: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
  - 5.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각각의 자격 또는 학위 취득 후 산업안전·산업보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: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 및 공통필수Ⅱ 과목
  - 6. 「공인노무사법」에 따른 공인노무사: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 I 과목
  - 7.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다른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: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Ⅲ 과목
  - 8.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같은 지도사의 다른 분야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

람: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Ⅰ, 공통필수Ⅱ 및 공통필수Ⅲ 과목

- ② 제103조제3항에 따른 제1차 필기시험 또는 제2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자격시험에 한정하여 합격한 차수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의 신청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한다.
- 제105조(합격자의 결정 등) ① 지도사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,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.
  - ② 지도사 자격시험 중 면접시험은 제103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되, 10점 만점에 6점 이상인 사람을 합 격자로 한다.
  -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관리해야 한다. <신설 2023. 6. 27.>

[제목개정 2023. 6. 27.]

- 제106조(자격시험 실시기관) ① 법 제143조제3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"이란 「한국산업인력 공단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(이하 "한국산업인력공단"이라 한다)을 말한다.
  -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3조제3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시험의 실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하는 경 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하여금 자격시험위원회를 구성 •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  - ③ 자격시험위원회의 구성 ·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.
- 제107조(연수교육의 제외 대상) 법 제146조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"이란 산업안전 또는 산업보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.
- 제108조(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등) ①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(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 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법인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법 제148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액이 2천만원 (법 제145조제2항에 따른 법인인 경우에는 2천만원에 사원인 지도사의 수를 곱한 금액) 이상인 보증보험에 가 입해야 한다.
  - ② 지도사는 제1항의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해 야 한다.
  - ③ 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## 제10장 보칙

- 제109조(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) 법 제158조제1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. <개정 2020. 9. 8.>
  - 1.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방호장치, 보호구, 안전설비 및 작업환경개선 시설·장비 등의 제작, 구입, 보수, 시험, 연구. 홍보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
  - 2. 사업장 안전 · 보건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업무
  - 3. 산업 안전 · 보건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업무
  - 4.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
  - 5. 법 제11조제3호에 따른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건강을 유지・증진하기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지원 업무
  - 6. 안전·보건의식의 고취 업무
  - 7.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원 업무
  - 8. 안전검사 지원 업무
  - 9. 유해인자의 노출 기준 및 유해성 · 위험성 조사 · 평가 등에 관한 업무
  - 10. 직업성 질환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・연구 또는 직업성 질환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· 장비 등의 구입 업무
  - 11.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지원 업무
  - 12. 법 제126조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・분석 능력의 확인 및 법 제135조제3항에 따른 특수건강 진단기관의 진단 · 분석 능력의 확인에 필요한 시설 · 장비 등의 구입 업무
  - 13. 산업의학 분야의 학술활동 및 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업무
  - 14.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 이 정하는 업무
- 제109조의2(보조・지원의 취소에 따른 추가 환수)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158조제3항에 따라 추가로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.

- 1. 법 제158조제2항제1호의 경우: 지급받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
- 2. 법 제158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: 지급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
- 3. 법 제158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조ㆍ지원이 취소된 후 5년 이내에 같은 사유로 다시 보조ㆍ지원이 취소된 경우: 지급받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
-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보조ㆍ지원을 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
-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경미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
- 에 따른 추가 환수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1. 11. 19.]

- 제110조(제재 요청 대상 등) 법 제159조제1항제1호에서 "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 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.
  - 1.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
  - 2. 제4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고
- 제111조(과징금의 부과기준) 법 제160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3과 같다.
- 제112조(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 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 을 내야 한다. <개정 2023. 12. 12.>
  -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, 지체 없이 수납한 사실을 고용노동 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.
  -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「행정기본법」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,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 개월 이내로 하며,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. <개정 2023. 12. 12.>
  - ⑤ 삭제 <2023. 12. 12.>
  - ⑥ 삭제 <2023. 12. 12.>
  - ⑦ 삭제 <2023. 12. 12.>
  -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・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다. <개정 2023. 12. 12.>
- 제113조(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) ① 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34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.
  - ② 법 제161조제3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"이란 과징금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과징금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.
- 제114조(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) 법 제16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 금의 부과와 납부에 관하여는 제112조를 준용한다.
- 제115조(권한의 위임)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게 위임한다. <개정 2021. 11. 19., 2023. 6. 27.>
  - 1.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
  - 2. 법 제17조제4항,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명령 또는 교체 명령
  - 3. 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(이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업종별 ·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제외한다)의 지정,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
  - 4.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
  - 5. 법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,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
  - 6. 법 제42조제4항 후단에 따른 작업 또는 건설공사의 중지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의 변경 명령
  - 7. 법 제45조제1항 후단 및 제46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 명령,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 태 평가 및 재제출 명령
  - 8. 법 제4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명령 및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의 접수
  - 9. 법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,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
  - 10.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

- 11.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접수, 심사, 그 결과의 통보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의 보완 명령
- 12.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
- 13. 법 제53조제3항 및 제55조제1항 ·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
- 14. 법 제53조제5항 및 제55조제3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해제
- 15.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 접수ㆍ처리
- 16. 법 제58조제2항제2호, 같은 조 제5항・제6항・제7항에 따른 승인, 연장승인, 변경승인과 그 승인・연장승인 • 변경승인의 취소 및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도급의 승인
- 17. 법 제7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,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
- 18. 법 제8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・해체업의 등록,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
- 19. 법 제84조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
- 20. 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표시 제거 명령
- 21.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취소,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및 시정 명령
- 22.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수거 또는 파기 명령
- 23. 법 제90조제4항에 따른 표시 제거 명령
- 24.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사용 금지 및 시정 명령
- 25.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수거 또는 파기 명령
- 26.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취소와 시정 명령
- 27. 법 제10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,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
- 28. 법 제102조제3항에 따른 등록 취소 및 지원 제한
- 29. 법 제112조제8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
- 30. 법 제113조제3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의 신고 접수ㆍ처리
- 31. 법 제11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의 승인 및 그 승 인의 취소
- 32. 법 제118조제1항・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의 제조・사용의 허가와 변경 허가. 수리・개조 등의 명령, 허가대상물질의 제조·사용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
- 33. 법 제119조제4항에 따른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의 이행 명령 및 이행 명령의 결과를 보고받을 때 까지의 작업중지 명령
- 34. 법 제12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지정,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
- 35. 법 제1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석면해체·제거업의 등록,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
- 36. 법 제12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
- 37. 법 제1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의 접수 및 수리
- 38. 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석면농도 증명자료의 접수
- 39. 법 제125조제5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의 접수·처리
- 40. 법 제12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,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
- 41. 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실시 등의 명령
- 42. 법 제132조제5항에 따른 조치 결과의 접수
- 43. 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보고의 접수
- 44. 법 제13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,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
- 45. 법 제14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,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
- 46. 법 제145조제1항 및 제154조에 따른 지도사의 등록,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
- 47. 법 제1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・처리
- 48. 법 제160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·징수(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)
- 49. 법 제161조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
- 50. 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청문(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)
- 51. 법 제1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(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)
- 52. 제16조제6항, 제20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접수
- 52의2. 제105조제3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증(고용노동부장관 명의로 된 자격증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발급 및 관리
- 53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데 따르는 감독상의 조치

[전문개정 2020. 9. 8.]

- **제116조(업무의 위탁)**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5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, 제6호부터 제10호까지, 제12호, 제15호, 제16호, 제18호부터 제30호까지, 제32호, 제33호 및 제35호부터 제41호까지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하다.
  -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5조제2항제1호, 제11호, 제13호, 제14호, 제17호, 제31호 및 제34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한다. <개정 2021. 11. 19.>
  - 1. 공단
  - 2. 다음 각 목의 법인 또는 기관 중에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거나 등록한 법인 또는 기관
    - 가. 산업안전·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「민법」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
    - 나. 법 제21조제1항, 제48조제1항, 제74조제1항, 제120조제1항, 제126조제1항, 제135조제1항 또는 제140조제2항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 또는 기관
    - 다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    - 라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
  - 3.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기관
  -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단, 법인 또는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명칭과 위 탁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또는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.
  - ④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 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단은 재위탁받은 법인 또는 기관과 재위탁 업 무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. <신설 2021. 11. 19.>
- 제117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고용노동부장관(법 제143조제3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시험 실시를 대 행하는 자, 법 제16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이 영 제116조제4항 전단에 따라 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 법」 제23조의 건강에 관한 정보(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(제7호 및 제8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·제4호의 주민등록번호·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<개정 2021, 11, 19., 2022, 8, 16., 2023, 6, 27.>
  - 1. 법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조를 요청한 사항으로서 산업재해 또는 건강진단 관련 자료의 처리에 관한 사무
  - 2. 법 제57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에 관한 사무
  - 3. 법 제129조부터 제1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
  - 4. 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 발급에 관한 사무
  - 5. 법 제138조에 따른 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에 관한 지도, 감독에 관한 사무
  - 6. 법 제141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
  - 7. 법 제143조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
  - 8. 법 제145조에 따른 지도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
  - 9. 제7조제3호에 따른 직업성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무
  - 10. 제105조제3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증의 발급 및 관리
- 제118조(규제의 재검토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6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·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 업주 범위에 대하여 2022년 8월 18일을 기준으로 4년마다(매 4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 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 <신설 2022. 8. 16.>
  -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 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 <개정 2020. 3. 3., 2022. 3. 8., 2022. 8. 16.>
  - 1.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에 따른 대상사업의 범위: 2019년 1월 1일
  - 2.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보고 · 승인 대상 회사: 2022년 1월 1일
  - 3. 제14조제1항 및 별표 2 제33호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인 건설업의 건설공사 금액: 2022년 1월 1일
  - 4. 제2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대상사업: 2019년 1월 1일
  - 5. 제52조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: 2020년 1월 1일
  - 6. 제9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요건: 2020년 1월 1일
  - 7. 제100조에 따른 자격・면허 취득자의 양성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

유: 2020년 1월 1일

## 제11장 벌칙

제119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17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5와 같다.

- 29 / 29 -

**부칙** <제34304호, 2024. 3. 12.>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